

# 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93,187,900	8,795,637
일반회계	269,703,008	8,091,090
특별회계	23,484,892	704,547
기타특별회계	23,484,892	704,54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60,378	25,811
주택사업특별회계	377,239	11,317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053,780	31,61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953,052	58,59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084,609	32,538
주차장특별회계	456,467	13,694
수질개선특별회계	16,694,308	500,82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656,697	19,701
기반시설특별회계	348,362	10,45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60,59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6,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